##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87					•				24. 2 산 시	
<ul><li>제약</li></ul>	안이유										
	·민 주도의 관 ·축 및 지속 >					_ '	역 7	기반학	형 관	광 신	상태겨
○ 관광기념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광마케팅 활성화 및 홍보 강회											
□ 주.	요내용										
○ 주	민 주도 관광	사업 지	원 근기	거 마	련 (인	제4	(조)				
○ 관	광기념품 등	지급에	관한 시	사항	신설	(안 계	에4 <i>3</i>	<u> </u> 의2	)		
( )	자어 본뜻에	맞는 표	현으로	용 6	] 정비	] (안	제:	5조ス	1항	)	
□ 개기	정조례안 :	【붙임	1]								
□ 신	• 구조문대비	]丑:	【붙임	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 관	<b>!</b> 광진흥법 제	48조, 저	76조								
□ 관	<b>런사업계획</b> 서	· 해당	<b>}사항</b>	· 없음	<u>)</u>						
	<b>산수반사항</b> 비용추계서 미			첨부							
•	<b>전예고(결과</b> ) 입법예고 : 20	• -			024.	1.	18.0	(20	<u>립</u> 간)		
	<b>ት 참고사항</b> 현행조례 : 방침결정문 :	- •									

#### [붙임 1]

##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또는 관광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행사에 참여한 경우
  -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자문을 구할"을 "의견을 물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ব	_관 실·과	문화관광과
입	실・과장	문화관광과장
안	직위・성명	이 영 분
	담당·팀장	관광정책팀장
	직위·성명	조 재 연
	담 당 자	함 순 영
자	성명・전화	(행정 3409)

### [붙임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
원 등) ① 안산시장(이하"시장"	원 등) ①
이라 한다)은 관광 관련 법인·단	
체 및 관광사업자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u>.</u>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
	를 위한 사업
<u>6</u> . (생 략)	<u>7</u> .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
	<u>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
	품 또는 관광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